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중랑구 중랑역로 38-8 010 5069 0052	690211 - 1548612 1000dduk@hanmail.net
청구 내용	중랑소방서 현장 대응 담당 화재 조사 보고서 요청  2020년 12월 6일 중화동 300-26 화재  돌다보내주세로 SKt269@sk.com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임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접수 기관의 장) 귀하

###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명	오 성숙	주민등록번호	690 217 1548612			
	주소	충남 구 충남역로 38-8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증명원 및 구급·구조증명서 조회 등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각종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상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화재증명원」 또는 「구급·구조증명서」를 접수(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정보를 중랑소방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1 월 1 일

신청인: 오 성숙 (서명 ~~또는~~ 또는 인)

중랑소방서장 귀하

<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

-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한 경우
- 신청인이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신청일	2020.12.22	유효기간	2021.01.21
성명	한글 오 성수 한자 吳成洙	1.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690217-1548612	2. 이 확인서 발급 시 인적사항· 사진 및 유효기간에는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하며, 투명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구분	[V] 거주자 [ ] 재외국민	3. 진위 확인 방법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역로 38-8(종화동)	1.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 또는 민원24( <a href="http://www.miwon.go.kr">www.miwon.go.kr</a> )를 이용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을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화제2동장 [인]			



서울종로구  
Jungnang-gu



- 전위 확인 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이며, 이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